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 권 역 | 지역구분 | 지역범위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지역 |
| | 세종특별자치시 | 전지역 |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지역 |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지역 |
| | 대구광역시 | 전지역 |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제18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이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4톤 초과
3. 연간 먼지 배출량이 0.2톤 초과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황산화물과 먼지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측정기기의 설치, 관리방법 및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19조제2항 관련)

1.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시설

2)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6) 비연소시설 중 전기 아크로 및 도장시설(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최근 연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배출구

가)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

다)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

나. 가목 후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배출구가 2개 이상이면서 인터넷 통신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FEP)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구 온도 및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온도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온도측정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출가스유량계·배출가스온도계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하며,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소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부착 예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예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제1호 가목의 부착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별표 3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1)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 자료 수집기 및 중간자료 수집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총량관리사업자는 측정기기에 의한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늘 전송하여야 한다.

4)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비고(3)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동중지 설비의 경우에는 재가동 전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량계

1)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비고: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 및 배출량 산정 기준

1)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2) 자동측정 자료의 배출량 산정기준

가) 30분 배출량은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월 배출량은 그램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3) 측정 자료의 무효처리 및 대체 자료 생성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나. 굴뚝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 오염물질 | 배출량(g) 산정방법 |
|---|---|
| 질소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3}$×46÷22.4 |
| 황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3}$×64÷22.4 |
| 먼지 | 30분 평균농도(㎎/Sm³)×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³)×$10^{-3}$ |

다. 연료유량계에 의한 방법

|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 - 방지시설 효율/100) |
|---|

비고

1.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을 적용한다.
2. 월당 연료사용량은 연료온도, 측정기기 고유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연료저장탱크의 게이지 값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적용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2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이하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으로 한다.
2.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로 전체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증량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 × 0.1×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사용 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 위반계수(제23조제2항 관련)

|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
| 위반계수 | 1.0 | 1.2 | 1.5 | 1.8 |

비고: 위반횟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5년)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 과징금 산정방법(제24조 관련)

| 구분 / 오염물질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 | | | | |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 | | | 지역별 부과계수 | | |
|---|---|---|---|---|---|---|---|---|---|---|---|---|---|---|---|---|---|
| | | 2% 미만 | 2% 이상 4% 미만 | 4%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 질소산화물 | 2,900원 | 1.20 | 1.45 | 1.70 | 2.00 | 2.50 | 3.50 | 5.00 | 7.00 | 1.0 | 1.2 | 1.4 | 1.6 | 1.8 | 2 | 1 | 1.5 |
| 황산화물 | 4,200원 | 1.20 | 1.45 | 1.70 | 2.00 | 2.50 | 3.50 | 5.00 | 7.00 | 1.0 | 1.2 | 1.4 | 1.6 | 1.8 | 2 | 1 | 1.5 |
| 먼지 | 6,500원 | 1.20 | 1.45 | 1.70 | 2.00 | 2.50 | 3.50 | 5.00 | 7.00 | 1.0 | 1.2 | 1.4 | 1.6 | 1.8 | 2 | 1 | 1.5 |

비고

1. 배출허용총량 초과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총량 초과율(퍼센트)=(연간 배출량 - 배출허용총량) ÷ 배출허용총량×100

2. 위반횟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이 할당된 기간 동안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누적 횟수를 말한다.
3.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Ⅱ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의한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제외한다)

다. Ⅲ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 사항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1호 | 60 | 80 | 100 |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호 | 30 | 100 | 300 |
| 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2호 | 50 | 75 | 100 |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 법 제49조제2항 | 100 | 150 | 200 |